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48
피고인 이창율 (경정,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 1계장)
사건명 공무상비밀누설, 김건희 특검법 위반 관련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귀중

---

1.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피고인 이창율 경정의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가 부당하게 전달되거나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면 그 책임은 엄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혹의 무게와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그 구별만큼은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소장, 증거목록, 공판조서와 통신자료 원본을 모두 열람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수사정보 전달과 자료 삭제 의혹을 확인된 범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이미 입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배경이나 여론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말을 하였고, 그것이 각 범죄의 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해 주십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 특별검사의 수사·기소 권한과 공소제기의 적법성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에 관한 절차적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권한의 문제는 실체적 유무죄와 구분하여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가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특별검사법의 문언과 그 법률이 정한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제정·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제11호에,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수사 방해·은폐 등의 의혹을 제15호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17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이 수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개별 행위가 자동으로 그 대상에 편입되는 것 역시 아닐 것입니다.

재판부께서 실제 공소사실과 이 사건이 어떤 본류 사건에 연결되는지, 법률상 요구되는 관련성이 어떤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종전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관한 의혹을 후속 종합특검이 어떤 근거로 수사·기소하였는지를 각각 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류 사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류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수사권한을 무한히 넓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는 단순한 절차상 의문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문제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또는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무효 등 실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할 때에만 그에 맞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먼저 특정되어야 할 사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보호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비밀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지 않아도 국가 기능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단순히 수사와 관계된 화제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동일한 정도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안에서 누설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사적 친분에 따른 정보 전달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은 수사지휘의 내용과 관련 수사상황이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그 판결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판결의 유리한 문장만 떼어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께서는 문제 된 정보의 원문 또는 정확한 취지, 당시 공개 여부, 취득 경로, 전달받은 사람의 지위와 인식, 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실질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사 진행의 일반적인 전망을 이야기한 것인지,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압수수색의 대상·방식·진행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려 준 것인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정보의 취득과 전달을 하나의 행위로 묶지 말아 주십시오

언론에서 알려진 의혹은 특검 파견 경찰관과의 접촉, 그 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연락, 나아가 관련 자료의 처리 정황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하나의 의심스러운 이야기로 이어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각 단계의 행위자와 의사, 전달한 정보의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처음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실제로 알려 주었는지, 그것을 피고인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뒤이은 연락에서 피고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대화 상대방이 그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는지 따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무상 얻은 정보인지에 관한 의문과 상대방에게 보호가치 있는 비밀을 실제로 누설했는지에 관한 의문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락의 존재 자체를 누설의 증거로 곧바로 바꾸거나,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확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대로 구체적인 내부 정보의 전달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증거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구별 없이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재판의 공정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5. 김건희 특검법 제21조의 수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법률은 김건희 특검법 제21조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했는지와 법이 정한 위계·위력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에 이르렀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망 또는 영향력 행사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행위가 특별검사 등의 어느 직무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가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 압수수색의 실패나 자료의 영구적 소실이 발생해야만 반드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 차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방해행위의 성립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자료에 나타난 연락과 표현이 어떠한 위계·위력을 구성하는지, 그것이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3자의 독자적인 결정을 피고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귀속할 수 있는지를 법률상 요건에 맞추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당시 김건희 특검법의 처벌 규정과 2026년 종합특검법의 수사권한 규정은 적용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검이 재판을 위해 수사·기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당시 행위가 어떤 실체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6. 자료 삭제·이동 의혹과 디지털 증거의 확인

보도에는 상대방의 전자자료 삭제·이동 정황과 피고인이 보안성이 높은 연락수단 등을 언급하였다는 의혹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연락수단에 대한 언급, 자료 삭제라는 후속 결과, 피고인이 그 삭제를 요구·유도하였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증명 단계입니다.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모두를 이미 증명된 사실처럼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대화의 전체 녹음과 원본 메시지, 송수신 시각, 실제 압수수색 관련 내부정보의 생성 시점, 전자자료의 삭제 또는 이전 시점, 복구 여부, 관계자의 개별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파일의 사건 관련성이나 복구 경위가 다투어진다면 그 사정도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단편적인 발언이 앞뒤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파일이 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그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다거나, 수사기관의 활동을 저지할 의사를 지녔다고 거꾸로 추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객관적 기록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범행 관여가 드러났을 때 이를 무시해 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피고인 개인의 행위와 제3자의 후속행위를 연결하는 증거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7.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판단을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특검법 위반 혐의는 각각 다른 법률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혐의에 불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혐의의 부족한 증명까지 보충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각 죄의 중요한 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반박되었는지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의 크기와 무관하게, 법정에서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증거의 무게가 판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예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우선적인 요청은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무죄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께서 일부 유죄로 판단하시는 경우까지 생각하여 예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행위의 범위, 전달된 정보의 성격과 보호가치, 수사에 미친 영향, 제3자의 독립적인 행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적이나 가족관계, 징계 전력 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처 사유인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검증된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그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 주시고, 입증되지 않은 다른 의혹이나 사건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피고인 개인에게 떠넘기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맺음말

재판장님, 누군가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형사처벌할 만큼 입증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어느 당사자에게도 미리 면죄부를 주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확인된 사실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한 사람의 책임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이 끝까지 지켜진다면 판결의 결론이 무엇이든 법원의 판단은 더욱 깊은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이창율에 대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절차적 판단을 내려 주시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예비적으로 일부 유죄를 인정하시더라도 증명된 개별 책임과 정식 양형자료에 근거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둘러싼 목소리보다 기록과 증거를 더욱 깊이 살펴 주십시오. 한 시민의 간절한 부탁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귀중